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90호

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과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(안 제17조의2)

-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

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 1.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녹색건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, 국토부 녹색건축과
- 팩스: 044-201-5574